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6. . . (제 회)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지정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에 따라 유효기간 설정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고,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또는 시정조치 명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조항 반영으로 실효성 확보

3. 주요내용

- 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법 제4조제7항)
- 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실효성 강화를 위해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궤도 및 이용자의 안전, 공공복리 증진, 다른 법령에
따른 계약관계 등을 고려하여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허가 시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유효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별표 1 Ⅱ 제1호 중 위반행위란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허가·변경
허가 또는 재허가”로 하고, 같은 Ⅱ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2의 2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허가 또 는 승인 취소
12의3.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2의 3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허가 또 는 승인 취소

별표 2 Ⅱ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 제2항 제6의 2호	운영정지 10일	운영정지 30일	운영정지 60일
6의3.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법 제12조 제2항 제6의 3호	운영정지 10일	운영정지 30일	운영정지 60일

별표 3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2의2호	400
7의3.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2의3호	40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조의3(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궤도 및 이용자의 안전, 공공복리 증진, 다른 법령에 따른 계약관계 등을 고려하여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허가 시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유효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연락처	(044) 201 - 4889